

# 의안 검토 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교육감
2. 건 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불 임 참 조
4. 검 토 의 견 : 불 임 참 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안문환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06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1. 개정사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교육감이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1개과·담당관의 여유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2 제1항)

나. 여유기구의 명칭, 사무분장, 직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제2항)

###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6년 6월 29일 개정되어 교육감이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1개 과·담당관의 여유기구를 설치하고 여유기구의 명칭, 사무분장, 직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이는, 기존의 기구에서 여유기구인 1개 과·담당관이 추가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 중 이던 혁신기구를 정규 직제화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정원 증원이나 소요예산이 추가로 증액되는 사항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